

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박강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1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08일
발 의 자: 박강산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동길, 김성준, 김원태,
김인제, 박철성, 봉양순,
송도호, 왕정순, 유정희,
윤영희, 이민옥, 이상훈,
이소라, 이영실, 이원형,
이종태, 전병주, 정준호,
최기찬, 최재란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, 인권, 평등 등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중시하는 외교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, 조례에 도시외교 관련 기능과 협력사항을 보완하여 정책고문이 정책방향 제시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에 ‘서울시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함(안 제2조제4호 신설)
- 나. 국제 정책고문의 협력사항에 ‘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’하는 내용을 추가함(안 제5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공외교법」, 「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」

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서울시의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책고문은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(이하 “정책고문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	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서울시의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5조(정책고문의 협력사항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(정책고문의 협력사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정책고문은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한다.</u>

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도시외교 관련 기능과 협력사항을 보완하여 정책고문이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조례 제2조(기능)제4호 및 제5조(정책고문의 협력사항)제3항을 신설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